

[교육자료 2016. 5. 4.(수) 15:00]

# 2016년 건설공사 관계자 교육



2016. 5.

**광진구청**  
(안전치수방재과)

# 2016년 건설공사 관계자 교육

## ■ 추진목표

- 시공품질 향상으로 품격 있는 도시 건설
- 철저한 현장관리로 신뢰 받는 행정 구현

## ■ 공사 시공시 당부 및 유의사항

### ■ 당면 사항

- 하도급 부조리근절 종합대책 이행
  - 1) 하도급 직불제 이행 - 서울시 “대금 e-바로시스템” 의무 사용
  - 2) 하도급 거래 표준계약서 사용 추진
  - 3) 하도급 대금 지급 예고 알림판 설치
    - 적용대상 : 하도급 계약이 포함된 모든 공사
    - 설치장소 : 공사현장 근로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
    - 설치주체 : 원도급자(원도급자와 하도급자 사전 협의)
    - 공고시기 : 하도급자에 공사대금 지급예정일로부터 3일전까지
    - 설치규격 및 형태 : 공사규모에 따라 탄력적 설치 - 1개 이상
    - 공사금액 5억원 이상 또는 공사기간 6개월 이상 : 매립형
    - 장소가 협소하거나 벽면 또는 가림막이 있는 경우 주변 여건에 따라 고정형 또는 부착형

- **공사근로자 노무비 지급확인제 실시(임금체불 방지)**
  - 적용대상 : 모든 근로자(하도급자 근로자 포함)의 임금
  - 적용시기 : 2012.4.2.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
  - 주요내용
    - 노무비 전용계좌를 통해 매월 정기적으로 노무비 지급
    - 노무비 지급내역은 발주기관에서 증빙서류(통장사본 및 대면질문 등 5일 이내 지급여부 확인)를 통해 확인
- **예비준공검사제 실시(부실공사 방지 및 청렴도 향상)**
  - 대 상 : 도급비 3억원 이상의 건설공사(연간단가계약 제외)
  - 검사시기
    - 중간검사 50%(주요공정 시행) 진행시
    - 예비준공검사 85% 이상 진행시
- **하수관거정비 시공전문기술교육 인증제 시행(한국상하수도협회)**
  - 대 상 : 품질관리자(품질관리자가 없는 경우 현장 참여기술자중 1인) 기능공(하수관거 부설 배관공) 전원
  - 내 용 : 착공시 이수증 사본을 제출하고 공사 시행시 이수증을 소지 (미이수자는 착공 후 4개월 이내에 교육 이수)

## 공사 시공시 유의사항

### [ 착공전 준비사항 ]

- **시공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적인 공사 시행**
- **공사 착공전 인근주민 홍보 실시**
  - 골목별 착공 5일전 홍보 실시
  - 공사안내간판 및 현수막 적정한 위치에 설치하여 주민홍보
  - 공사안내문을 공사구간 및 인근 주민에게 배포하여 홍보

- 공사에 필요한 안전시설 확보(안전헬스, 라바콘, 링카 등)
- 현장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과 친절교육 실시
  - 현장종사자 안전복, 안전화, 안전모 등 필히 착용
  - 안전조끼는 통일되게 착용
- 보행인을 위한 우회도로 확보여부 확인
- 공사장의 비산먼지 발생을 줄일 수 있는 방법 강구 후 시행
- 각 유관기관(경찰서, 도시가스, 통신 등) 사전 협의 후 공사착공

### [ 포장절단, 철거시공 개선방법 이행 ]

- 포장 절단시 저소음 컷터기 사용 의무화
  - 기존 컷터기 및 브레이커 사용을 금지하고, 포장 깨기시 종횡방향으로 바둑판처럼 추가 절단(종방향 2열→3열, 횡방향 1m간격 절단)하여 갈고리형 리퍼로 걷어내는 방법 이행
  - 구조물 철거시 브레이커 사용 대신 진동이 적은 압쇄기로 철거

### [ 공사장 안전관리 철저 ]

- 공사장 보행공간 확보
- 공사장 안전통행을 위한 안전헬스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
- 공사장 안전감시원, 교통정리원, 보행안전도우미 의무 배치

### [ 하수관거 시공시 ]

- 신설 및 개량되는 우·오수관로는 서울시 하수도분야 업무처리 지침 및 하수도 표준 구조물도에 따라 시공 철저
- 본관 시공시 물고임 등 역구배가 없도록 시공관리 철저
  - 측량을 실시하여 경사 검측 기록관리
- 본관 연결부 이격으로 인한 누수발생이 없도록 정밀 시공
- 배수설비 연결관 접합시 수밀성이 양호한 단지관(새들포함) 사용

- 다짐이 취약한 관 상단까지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치환
  - 불량토사 선별 및 치환사용 철저히 이행(다짐도 증진)
- 되메우기시 다짐 철저히 및 층다짐 실시 - 도로포장 후 침하 방지

### [ 맨홀 시공시 ]

- 맨홀 구체와 하수관 연결부분 정밀시공
- 맨홀이 하수관 중앙에 위치하도록 시공
- 맨홀 인버트 및 점검사다리 시공 철저히
- 맨홀뚜껑은 도로포장 후 노면과 일치되도록 계획고를 고려하여 설치(조적사용 금지)

### [ 빗물받이 시공시 ]

- 빗물받이 시공시 거푸집 사용 철저히(내측, 외측)
- 빗물받이 연결관 시공 철저히
  - 연결관 접합은 반드시 천공기를 사용하고, 단지관을 사용하여 접합
- 빗물받이에 몰탈, 협작물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히

### [ 포장분야 ]

- 하수관 부설 후 장기간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신속하게 가포장 실시
- 야간공사는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당일복구 철저히
- 기층포장(보조기층, 혼합기층) 시공시 포설두께 준수 및 층다짐 실시
  - 포설두께
    - 도로폭 20m 미만도로 : 혼합기층 20Cm, 보조기층 30Cm
    - 도로폭 20m 이상도로 : 혼합기층 20Cm, 보조기층 40Cm
- 아스콘포장(중층, 표층) 시공시 유제살포 철저히
  - 포장 대상구간에 전구간을 균일하게 살포
  - 유제 살포량(a당)
    - 중 층 : 프라임코팅 75 ℓ
    - 표 층 : 택코팅 30 ℓ

## [ 보도공사분야 ]

- 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보도포장 전문기술 교육과정 이수
- 보도블록 10계명 이행 서약서 제출
- 시민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하여 보행안전도우미 반드시 배치
  - 보행안전도우미는 서울시 배치기준에 맞게 별도 배치(중복업무 금지)
    - 임시보행로 연장 10m 이상 30m 미만 ⇒ 1인/일
    - 임시보행로 연장 30m 이상 ⇒ 2인/일
  - 보행안전도우미 임무
    - 공사장을 통행하고자 하는 보행자에게 임시보행로 안내
    - 임시 보행로의 안전휀스, 보행안내판 등 안전시설 점검
    - 보도공사관련 불편사항 현장민원 접수, 공사 관련 문의사항 안내
    - 기타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활동
- 보행자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별도의 임시보행로 설치
  - 보행자를 부득이하게 공사장 내로 통행시 다짐작업후 미관을 저해하지 않고 우천시 미끄럼현상이 없는 고무패드 설치
  - 보행자를 횡단시킬 경우에는 안전발판 설치
- 보도공사 실명제 표지판 설치
  - 연장 100m이상 모든 전폭보도포장공사는 보도 공사참여자의 책임시공 의지 강화를 위하여 실명제 표지판 설치

## [ 기타사항 ]

- 서울시 “도로상 L형측구 품질관리 개선” 이행 철저
  - 측구 타설시 6m마다 수축줄눈 설치 후 줄눈재 주입(줄눈폭 6mm, 깊이 50mm)
  - 작업중단 또는 일일포설 종료지점은 시공줄눈 설치
  - 기초 바닥면 다짐 후 살수 및 비닐 설치 후 콘크리트 타설
  - 기타 레미콘 품질관리 철저 등

● **경계석 시공 철저**

- 기초거푸집 설치 후 콘크리트 타설
- 건물신축 등으로 양호한 구간은 시공 대상에서 제외

● **공사장 분진발생이 없도록 수시 물청소 실시 등 현장관리 철저**

● **당일 작업구간 공사현장 점검 및 정비 후 철수**

- 공사자재 · 폐기물 등 방치 여부
- 사용장비 이동 조치 여부
- 공사안내간판, 교통표지판 설치 상태
- 기타 주민통행 불편사항 등 점검 · 정비

## **공사 준공시 점검사항**

● **현장에 잔재, 잔토, 자재 등의 방치가 없는지 확인**

● **검측체크리스트 작성**

- 주요점검내용

- 관로 및 사용재료는 KS규격 제품을 사용하였는지 여부
- 관의 내.외부 연결상태는 수밀성을 확보하여 시공하는지 여부
- 맨홀의 점검사다리(스텐레스 사용) 설치하였는지 여부
- 천공은 반드시 절단기를 이용하였는지?
- 공사실명제 표지판 및 안전띠는 설치하였는지?
- 관급자재 및 폐기물 등 각종 관련서류는 설계와 일치하는지?
- CCTV촬영보고서 제출여부 확인
- 하수시설물(관로, 맨홀 등) 공공측량 및 GIS DB 탑재

## **배수분구 책임감리 지시사항**

- 배수분구공사 현장 관련, 감사지적(행정조치, 재시공 등), 노임체불, 부실시공으로 인한 고질민원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감리업무 철저

## 당부사항

- 현장과의 소통강화를 통한 부조리 근절
  - 현장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통하여 부패지수가 낮아지도록 노력
  - 현장과 다양한 소통채널 확보로 불만해결 및 상호 청렴성 향상